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014

발의연월일: 2023. 5. 15.

발 의 자: 김성원·김희곤·정우택

최춘식 • 구자근 • 이종배

박대수 · 이주환 · 최영희

태영호 · 김용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,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 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하여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,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.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평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며,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4조, 제6조의2, 제6조의5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"채무 및 지식재산권(知識財産權)"을 "채무·지식재산권(知識財産權) 및 가상자산(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)"으로 하고,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

15. 가상자산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5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

제6조의2의 제목 중 "주식거래내역"을 "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주식의"를 "주식 및 가상자산의"로, "주식거래"를 "거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주식거래내역"을 "거래내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주식거래"를 "거래"로 한다.

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"신용정보회사등"을 "신용정보회사등,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생 략)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	②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동산·증권·	3
채권· <u>채무 및 지식재산권(知</u>	<u>채무・지식재산권(知</u>
識財産權)	識財産權) 및 가상자산(특정
	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
	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	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)
가. ~ 카. (생 략)	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타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
	<u>이상의 가상자산</u>
4. • 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	3
의 종류별 가액(價額)의 산정방	
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	
다.	.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5. 가상자산은 「상속세 및 증
	여세법」 제65조에 따른 방법
	으로 평가한 가액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<u>주식거래내역</u> 의 신고)	제6조의2(<u>주</u>
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	<u>내역</u> 의 신
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	
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	
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	
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의 <u>주식의</u> 취	
득 또는 양도에 관한 <u>주식거래</u>	
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	<u>및</u> 가상지
한다.	
② 제1항에 따른 <u>주식거래내역</u>	2
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	
범위,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
정한다.	
③ 제1항에 따른 <u>주식거래</u> 의	3
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고
제6조의5(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	제6조의5(금
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) ①	정보의 제
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	
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	
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	
등록 또는 신고(이하 이 조에	

서 "재산등록·신고"라 한다)

ll6조의2(<u>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</u>
<u>내역</u> 의 신고) ①
<u>주식</u>
<u>및 가상자산의</u>
<u>거 래</u>
② <u>거래내역</u>
 ③ <u>거래</u>
<u>/ ମା</u>
· ④ (현행과 같음)
ll6조의5(금융거래정보·부동산
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) ① -

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33조 및 「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 무자가 요청하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 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금융기관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|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15조에 따른 신 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에 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(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해당 금융기관 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

신용정보회사등,
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
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
사업자

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있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생 략)